

##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### 2-에틸 헥산올(2-Ethyl-1-hexanol)

#### Section 1 –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<b>가.제품명</b>	2-에틸 헥산올(2-Ethyl-1-hexanol ); 2-Ethyl hexyl alcohol; Ethylhexanol
<b>나.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</b>	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<b>다.공급자 정보</b>	
회사명 : 삼전순약공업(주)	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117(모곡동)
긴급전화번호 : 031-668-0700/3	담당부서 : 안전환경팀
인터넷 주소 : <a href="http://www.samchun.com">http://www.samchun.com</a>	

#### Section 2 – 유해성·위험성

<b>가.유해성위험성 화학물질 분류</b>	급성 독성(경구)	구분4
	급성 독성(경피)	구분4
	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	구분2
	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	구분2

#### 나.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◦그림문자



◦신호어

경 고

◦유해·위험 문구

H302 삼키면 유해함  
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 
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
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(호흡기계)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
◦예방조치문구

**예방**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  
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  
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십시오.  
P260 (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
**대응** P330 입을 씻어내시오.  
P301+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 
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 
P321 (Section 4. 응급조치 요령에 따라) 처치를 하시오.  
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/(...)로 씻으시오.  
P361+P364 오염된 모든 의복은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.  
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.  
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  
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
**저장** 자료없음

**폐기** P501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

#### 다.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

NFPA 지수(0~4단계) : 보건=2, 화재=2, 반응=0





라.토양 이동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료없음  
마.기타 유해영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료없음

**Section 13 – 폐기시 주의사항**

가.폐기방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.  
나.폐기시 주의사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.  
    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 
    폐기 방법을 포함함)

**Section 14 –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가.유엔번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993  
나.유엔적정 선적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2-Ethyl-1-hexanol  
다.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      3  
라.용기등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III  
마.해양오염물질(해당 또는  
    비해당으로 표기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료없음  
바.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  
    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  
    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  
    별한 안전대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화재시 비상조치:F-E  
  유출시 비상조치:S-D

**Section 15 – 법적 규제현황**

가.산업안전보건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해당없음  
나.화학물질관리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해당없음  
다.위험물안전관리법             제4류 제3석유류(비수용성액체)2000L  
라.폐기물관리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정폐기물  
마.기타 국내 및 외국법         해당없음

**Section 16 – 그 밖의 참고사항**

가.자료의 출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,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, 한국소  
  방산업기술원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,  
나.최초 작성일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2. 7. 30  
다.개정횟수 및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6 / 2019.01.03  
    최종 개정일자  
라.기타

\* 이 MSDS는 작성시 당사의 전문지식, 최신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 주어진 정보는 안전한 취급,사용,공정,저장,운송,폐기 등에 관한 안내 자료일 뿐이며 제품의 질적 특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.